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 리히텐슈타인공국 ·
스위스연방 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이 일방이 되고,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 및 스위스
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이라 한다)이 타방이 되어(이하, 집합적
으로 “당사국들”이라 한다),

상호간에 증진된 투자기회가 당사국들의 민간 자본의 흐름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임을 인식하며,

일방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타방 당사국 영역 내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창출 및 유지하고, 그러한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보호를 제공할
의도를 가지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
협정”이라 한다)과 동시에 행하여진 서명임을 상기하며,

이 협정이 자유무역협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
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기업”이라 함은 영리목적 여부 및 민간소유 또는 정부소유 여부에 관
계없이, 주식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개인기업·지사·합작투자기업 또는
그 밖의 연합체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말한다.

2.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 특히 다음을 말한다.

가. 기업

- 나.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그 밖의 물권적 권리
- 다. 지분 · 주식 및 기업에 대한 그 밖의 종류의 지분참여
- 라. 채권 · 회사채 · 대부 및 그 밖의 형태의 차입
- 마. 금전적 청구 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업과 관련된 이행청구
- 바. 지적재산권 · 기술적 노하우 및 영업권. 또는
- 사. 천연자원의 탐사 · 개발 · 추출 또는 채굴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양허 · 면허 · 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3.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라 함은 당사국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를 말한다.

4.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 가. 그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 나. 그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되고, 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행위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지점을 제외한 다른 실체로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거나 이미 투자한 자를 말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당사국의 투자자에, 그리고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적용된다. 이 협정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된 청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4조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분야가 자유무역협정의 제3장 또는 제4장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투자와 관련된 다른 국제협정상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유럽자유무역연합 개별 당사국들 간의 투자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일방으로 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을 타방으로 하는 투자관계에 적용된다.

제 3 조 일반적 대우 및 보호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다른 당사국들의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호의적이고 투명한 조건을 창출하고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어떤 당사국도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투자의 운영·경영·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해하지 아니한다.

3.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특정한 투자에 대하여 지게 된 서면의무로서, 그 투자자가 투자를 설립·인수 또는 확장할 때 선의로 의지하였을 의무를 준수한다.

제 4 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1.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청산·판매·송금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 및 자국 투자자의 투자

(내국민대우) 또는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최혜국대우)에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한다.

2. 당사국이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또는 실질적인 투자자유화를 규정하는 유사한 협정에 의하여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협정에서 부여되는 혜택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3.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는 직접세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편차를 조건으로 조세조치에 적용¹⁾된다. 그러나 당사국이 이종 과세방지협정에 의하여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의 기준은 당사국의 사회정책 또는 경제개발정책에 기초한 보조금에는, 그러한 보조금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기업 또는 기업가를 유리하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른 당사국이 그러한 보조금이, 특정한 사례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기회에 심각한 왜곡효과를 갖는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는 호의적인 고려가 부여된다.

5. 제1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의 기준이라 함은, 지방정부에 대하여, 그 지방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1)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의 각주 6이 적용된다.

제 5 조

송 금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지불이 자체 없이 자국 영역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자유롭게 송금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금액
- 나. 이윤·이자·배당금·자본이득·사용료·수수료 및 현물수익
- 다. 융자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 라.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청산에 따른 대금
- 마.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고용된 인력의 급료 및 다른 보수
- 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 사. 제16조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더 나아가 그러한 송금이 자유태환가능통화, 다시 말해서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고, 국제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통화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송금은 송금 당일 지배적인 시장 환율로 이루어 질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가. 파산, 지불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 나. 다음과 관련된 법 및 규정 또는 법 및 규정의 준수 보장
 - (1) 유가증권·선물 및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및 거래. 또는
 - (2) 송금에 대한 보고 또는 기록. 또는
- 다. 형사 범죄와 행정 및 소송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

제 6 조

임시 긴급제한조치

1.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사국들 간 지불 및 자본이동이 어느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본이동에 대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엄격히 필요한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 통화기금 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긴급제한조치의 적용은 이의 공식적인 재도입을 통하여 연장될 수 있다.

2. 긴급제한조치를 채택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의 철회를 위한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통화 및 환율 정책

제5조 상의 당사국들의 의무를 넘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핵심인력

1.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입국·체류 및 근로와 관련된 자국의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 또는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의하여 고용된 핵심인력이, 자문 또는 핵심 기술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관련 투자의 경영·유지·이용·향유·확장 또는 처분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에 일시적인 입국 및 체류를 허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가, 국적 및 시민권에 관계없이, 투자자 또는 투자가 선택하는 핵심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핵심인력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체류 및 근로를 허가받았고 당해 고용이 그러한 핵심인력에게 부여된 혜가의 조건 및 시간제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시적 입국·체류 및 근로허가를 부여받은 자연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자국의 관련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일시적 입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필요한 확인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그 자연인의 체류기간을 인정받는다.

제 9 조 보건 · 안전 및 환경조치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보건·안전 또는 환경상의 고려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이 협정과 합치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들은 국내 보건·안전 또는 환경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대 또는 유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철회 또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회 또는 완화할 것을 제안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 그러한 장려를 제안하였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다른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국들은 그러한 장려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10 조 건전성조치

자유무역 협정 제4.8조 제2항이 이 협정에 준용된다.

제 11 조 투명성

자유무역 협정 제10.1조가 이 협정에 준용된다.

제 12 조 유 보

1. 제4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는 다음의 유보가 제4조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당사국에 의하여 열거된 유보
 - 나. 그 개정이 유보의 제4조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호에 의하여 포함된 유보의 개정. 그리고
 - 다. 이 협정상 그 당사국의 약속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되고 당사국의 부속서에 통합되는 새로운 유보
2. 제19조에 규정된 검토의 일부로서, 당사국들은 유보를 줄이거나 삭제하기 위하여 부속서에 규정된 유보의 현황을 검토한다.
3.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게 서면통지에 의하여 자국의 부속서에 규정된 유보를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언제라도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거나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게 서면통지에 의하여 제1항다호에 따라 자국의 부속서에 새로운 유보를 언제라도 통합할 수 있다. 그러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른 당사국들은 그 유보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새로운 유보를 통합하려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를 개시한다.

제 13 조 수용 및 보상

어느 당사국도, 그 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차별적 기초 하에서, 그리고 적법절차에 따라 취하여지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지 아니한다면, 수용 또는 국유화 또는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반하여 이와 동일한 성격이나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어떠한 조치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조치가 취하여진 때 또는 대중에게 알려진 때 중 먼저의 시점 직전에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격에 상당하여야 한다. 보상액은 수용일로부터 지불일까지의 통상적인 상업적 이율의 이자를 포함하고, 자유태환가능통화로 정산되며, 지체 없이 지불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여야 한다²⁾.

제 14 조 손실에 대한 보상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 · 혁명 · 국가 비상사태 · 반란 · 시민폭동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자에 손실을 입은 경우, 그 당사국이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해당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제 15 조 변제자대위

1.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적 보증에 따라 지불을 한 경우, 다른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변제자대위의 원칙에 따라 당해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하고 그로 인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의 동의 없이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2) 제13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 또는 지적재산권의 취소 · 제한 또는 생성에는 그러한 발동 · 취소 · 제한 또는 생성이 자유무역협정 제7장에 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기초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16 조 투자자와 당사국 간의 분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이 적용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여 그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사안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서면 협의요청일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안은 해당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 또는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 가. 1965년 3월 18일에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이 이용가능한 경우, 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 또는
 - 다.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될 특별 중재판정부
3.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제2항에 따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데에 대하여 이로써 사전동의를 부여한다. 다만, 분쟁투자자가 중재청구가 제기되기 전 최소 60일 전에 자신의 의사로 분쟁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³⁾
4. 일단 투자자가 제2항에 규정된 국내법원 또는 국제중재 메커니즘 중 어느 곳에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그러한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더 나아가, 투자자가, 제3조제3항에 규정된 대로, 당사국이 그 투자자에 의한 특정

3)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투자” 용어는 투자가 더 이상 설립 또는 획득의 과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의 상황을 말한다.

투자와 관련하여 지게 된 서면의무와 관련된 청구를 국내 법정에 제기하였을 경우, 그 투자자는 동일한 사안을 국제중재에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다.

5. 당사국은 분쟁투자자가 자신의 권리 및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제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의 장에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 손해배상과 분쟁사안의 실질 문제의 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잠정보호 조치를 구하는 것을 금지하여야하는 아니된다.

6. 투자자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7. 분쟁당사국은 그 절차 진행 중 어느 때에도 자국의 면제 또는 그 투자자가 발생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배상을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방어로서 주장할 수 없다.

8. 어떠한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이 중재판정을 준수하고 따르지 아니하지 않는 한, 국제중재에 회부된 분쟁을 외교적 채널을 통하여 추구하여야하는 아니된다.

9.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고 기속력을 가지며, 당해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제 17 조

금융서비스에서 투자자와 당사국 간의 분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6조에 따라 분쟁당사국에게 국제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그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분쟁당사국이 제6조·제7조 또는 제10조를 발동하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자유무역협정 제4.20조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서비스 소위원회에 결정을 내려 주도록 사안을 서면으로 회부 할 수 있다. 이 사안의 목적상, 그 소위원회는 분쟁당사국과 투자자의 당사

국의 대표만으로 구성된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서, 금융서비스 소위원회는 제6조·제7조 또는 제10조가 투자자의 청구에 대한 유효한 방어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한도 까지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소위원회는 그 결정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소위원회가 언급된 조항 중 하나가 유효한 방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는 청구를 국제중재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위원회가 언급된 조항 중 하나가 유효한 방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거나 회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는 그 청구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투자자가 청구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경우, 패널은 자유무역협정 제4.21조제4항을 준용하여 구성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6조가 적용된다.

제 18 조 당사국 간의 분쟁

자유무역협정 제9장이 이 협정의 당사국 간에 준용된다.

제 19 조 검 토

투자의 점진적 자유화를 위하여, 당사국들은 투자 법률 체제, 투자환경 및 국제투자협정상 자신들의 약속에 합치하는 당사국 영역 간 투자의 흐름을 이 협정 발효일 후 3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검토한다.

제 20 조 예 외

다음의 조치가 같은 조건이 우세한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수단을 구성하거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 다.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 21 조 위원회

- 1. 이 협정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설치된다.
- 2. 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토한다.
 - 나.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 다.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 3. 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 4. 위원회는 부속서를 개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5항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의 발효일을 정할 수 있다.
- 5. 위원회에서 당사국의 대표가 현법상 요건의 완료를 조건으로 결정을 수락한 경우, 그 결정은 결정 자체가 이후의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마지막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한 날에 발효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당사국 중 하나인 경우, 국내 요건을 완료한 당사국에게 결정이 발효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상 요건을 조건으로, 그러한 결정이 발효하기 전까지 위원회의 결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의 공동위원회와 동시에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위원회의 활동을 통보한다.

7.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 중 한 국가가 공동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제 22 조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제 23 조 개 정

1.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이 협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승인 후에, 각 당사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른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은 마지막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후 세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3.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뿐만 아니라 개정 원본도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 24 조 가입

1.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인 국가는, 가입하려는 국가와 기존 당사국들 간에 합의된 조건으로 위원회가 가입을 승인한 후에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2. 가입국에 관하여, 이 협정은 가입서의 기탁 또는 기존 당사국에 의한 가입조건의 승인 중에서, 더 늦은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제 25 조

발효

1. 이 협정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2. 이 협정은 자유무역협정과 이 협정을 모두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된다. 다만, 그 국가들이 기탁처에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이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국가들 중 하나이어야 한다.
3. 이 협정 발효 후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는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되거나,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대한민국과 해당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 간에 발효한 경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으로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4. 자국의 헌법상 요건이 허용하는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은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이 협정의 잠정적용은 기탁처에 통보된다.

제 26 조

탈퇴 및 종료

1. 당사국은 기탁처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그 통지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된다.
2. 대한민국이 탈퇴하는 경우, 이 협정은 제1항에 규정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어느 당사국이 자유무역협정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그 탈퇴는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에도 미친다.
4. 자유무역협정이 종료하는 경우, 이 협정은 같은 날에 종료한다.
5. 이 협정에서의 탈퇴 또는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관하여, 제1조 내지 18조 및 제20조는 탈퇴 또는 종료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제 27 조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투자촉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이 시행 중이거나 유효한 동안에는, 이 협정은 1971년 4월 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투자촉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고 효력을 정지시킨다.

제 28 조

기탁처

스위스 정부가 기탁처의 역할을 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본으로 1부 작성된 원본이 스위스 정부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